ETC 시스템 이용 규정 실시 세칙

(목적)

제1조 이 실시 세칙은 ETC 시스템 이용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합니다.) 제12조에 근거하여 ETC 시스템의 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용 방법)

제2조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혼슈시코쿠 연락 고속도로 주식회사 또는 공사 등이 관리하는 유료 도로의 입구 요금소(이용하는 도로 또는 도로 구간의 시점이며 통행권을 발권하는 요금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차재기에 ETC 카드를 삽입하여 ETC 차선을 통행한 경우에는 출구 요금소(이용하는 도로 또는 도로 구간의 종점이며 통행 요금을 청구하는 요금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검사 요금소(통행권을 검사하는 요금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차재기에 ETC 카드를 삽입하여 ETC 차선을 통행할 때에 입구 요금소에서 이용한 차재기 및 ETC 카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2 생략

(통행 방법)

제3조 ETC 시스템 취급 도로관리자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에서 이용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통행 요금을 청구하는 요금소에서 일반 차선(ETC 차선 및 일단정지를 요하는 ETC 차선 이외의 차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혼재 차선('ETC/일반' 표시가 있는 차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통행하면서, 일단 정차한 다음 직원에게 ETC 카드를 줌과 동시에 이용증명서를 청구하여 주십시오. 단, 스마트 IC에서는 이용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ETC 시스템 취급 도로관리자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에서 ETC 시스템으로 장애인 할인 조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ETC 시스템 취급 도로관리자가 별도로 정한 수속(이하 본 항에서 '수속'이라고 합니다.)을 하십시오. 그리고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ETC 차선 및 일단 정지를 요하는 ETC 차선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직원의 처리로 장애인 할인 조치를 받으려고 할 때는 통행 요금을 청구하는 요금소에서 일반 차선 또는 혼재 차선을 통행하면서 일단 정차하고 직원에게 신체장애인수첩 또는 요육수첩을 제시한 다음 ETC 카드를 주십시오. 단, 스마트 IC에서는 개폐봉의 개폐와 관계없이 개폐봉 앞에서 정차하여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십시오.

3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혼슈시코쿠 연락 고속도로 주식회사 또는 공사 등이 관리하는 유료 도로의 입구 요금소에서 차재기에 ETC 카드를 삽입하여 ETC 차선을 통행한 경우에 출구 요금소 또는 검사 요금소에서 ETC 차선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일단 정차하여 ETC 카드를 직원에게 주십시오. 단, 출구 요금소가 스마트 IC인 경우에는 안내판, 직원의 지시, 기타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4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혼슈시코쿠 연락 고속도로 주식회사 또는 공사 등이 관리하는 유료 도로의 입구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경우에는 출구 요금소 또는 검사 요금소에서 일반 차선 또는 혼재 차선을 통행하면서 일단 정차하고 ETC 카드와 통행권을 직원에게 주십시오. 단, 출구 요금소가 스마트 IC인 경우에는 해당 요금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생략

6 고속 자동차 국도 및 혼슈시코쿠 연락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에서 통행 금지로 인해 도중에 빠져 나온 자동차가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혼슈시코쿠 연락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실시하는 요금 조정을 받으려고 할 때는 다시 진입할 때에 통행 금지로 인해 도중에 빠져 나오기 전에 이용한 차재기 및 ETC 카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서행 방법)

제4조 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와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된 서행을 할 때는 ETC 차선 내에서 앞차가 정차하였을 경우, 개폐봉이 열리지 않거나 혹은 닫히는 경우, 기타 통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앞차 또는 개폐봉, 기타 설비에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통해하여 주십시오.

(기타 사항)

제5조 생략

부 칙

1 이 실시 세칙은 2014 년 3 월20일부터 적용합니다. 단, 현재 ETC 시스템을 이용하여 요금 징수를 하지 않는 도로 또는 ETC 시스템 취급 도로관리자에 대해서는 ETC 시스템을 이용하여 요금 징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2 2013 년 3 월21일부 ETC 시스템 이용 규정 실시 세칙은 본 실시 세칙의 적용으로 인해 폐지합니다(이하 생략).